

의안번호 제 29 호
의결년월일 1997. 9. 4 .

의결사항

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사 천 시 장
제출년월일	1997. 8. 29 .

사천시리장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9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'97. 8. 28

제출자 : 사천시장

1. 제안이유

곤명면 정곡리 완사, 정곡마을은 남강댐 보강공사 사업으로 수몰지역에 편입되어 정곡이주단지로 이주를 하였으므로 정곡마을을 폐지하여 완사마을로 통합하고 정곡리리장 3인을 2인으로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곤명면 정곡리의 리장 정원중 “3”을 “2”로 하고, 곤명면 정곡리 관할구역중 “정곡 완사, 신기일원”을 “완사, 신기일원”으로 함.

3. 법적근거

지방자치법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

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별표 리장정수 읍·면별, 리동명, 정원, 관할구역중 곤명면 정곡리리장
정원중 “3”을 “2”로하고, 곤명면 정곡리 관할구역중 “정곡, 완사, 신기일원”
을 “완사, 신기일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